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748
------	-----

2009. 02. 1
재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09년 1월 30일

다.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09년 2월 13일) 상정,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가.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구성 등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동 번영하는 시정의 주요 방향을 확립하는 한편, 서울특별시가 국제적인 지속가능발전의 모범도시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 및 절차를 정함(안 제2조)
-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을 정함(안 제4조)
-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절차 등을 정함(안 제7조)
-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대상 및 시기, 위원회의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8조)
-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안 제9조)
-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은 50명 이내로 함(안 제11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의 : 환경행정담당관 등과 합의되었음
-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08.10. 9. ~ 2008.10.29.) 결과 : 별첨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령)

- 본 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내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중 권역별관광개발계획, 친환경농업실천계획 등 31건의 행정계획에 대한 겸토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함은 물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이행계획의 수립·추진,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운용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방법·절차 등(안 제2조, 안 제4조)

-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¹⁾ 및 이행계획²⁾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6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려는 것임.

이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관련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므로, 타당한 절차라고 판단됨.

나.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절차³⁾(안 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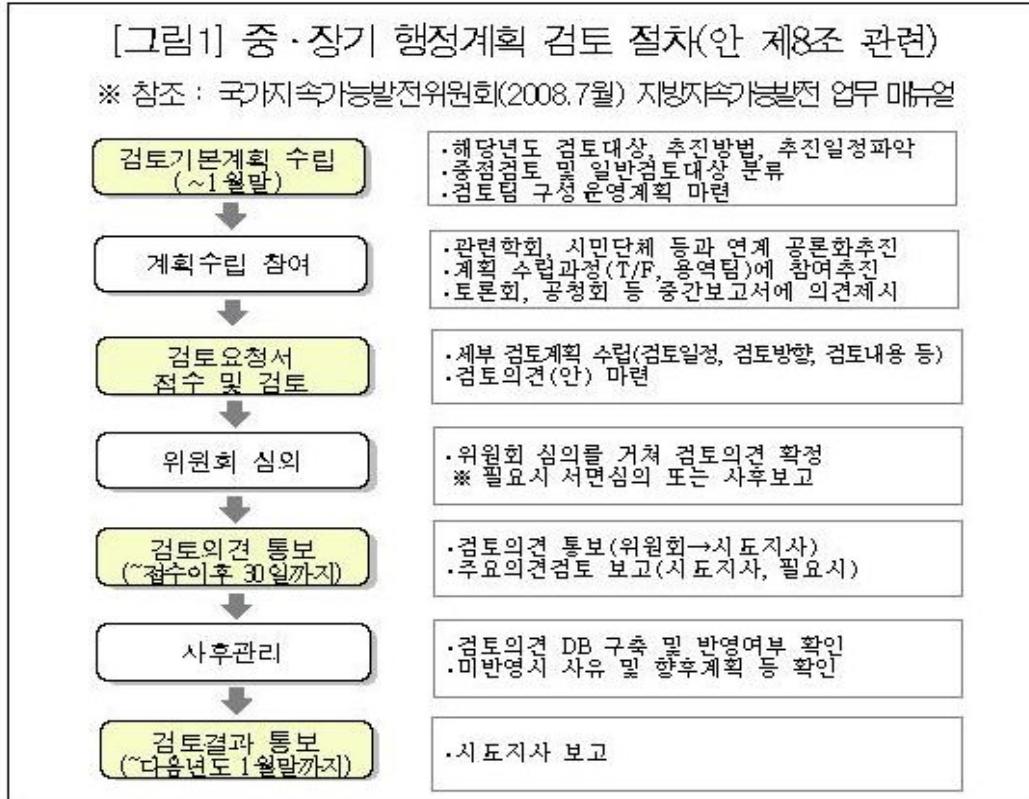
-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은 최근 2년간의 이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는 이행계획의 수립과 주기적인 추진상황의 점검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이행 노력이 제고(提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적절한 절차라고 하겠음.

다. 행정계획 수립·변경 등에 따른 절차 등(안 제8조)

- 별표에서 정한 31개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이 위원회에 통보하고⁴⁾, 위원회에서는 각각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 [그림1]과 같은 절차를 거쳐 행정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

[그림1]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 절차(안 제8조 관련)

* 참조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8.7월) 지방지속가능발전 업무 매뉴얼



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9조 제3항,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1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기본 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0 (제213회-제2차)

- 이러한 절차들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시 사전에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주요정책에 지속가능발전 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판단됨.
- 라.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의 평가·공표(안 제9조 및 제10조)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보급⁵⁾하고, 2년마다 국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공표⁶⁾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하여 지속가능성이 취약한 정책분야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한 후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은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이므로 서울특별시장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마.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11조부터 안 제22조까지)
 - 위원회의 구성은 시장 소속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토록 규정하려는 것임.

[표1]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 | | |
|---|---|
| ○ 당연직(7명) : 경영기획실장, 여성가족정책관, 경쟁력강화본부장,
맑은환경본부장, 복지국장, 도시교통본부장, 물관리국장 | ○ 위촉직(43명) : 경제, 사회, 환경 분야별 시민단체, 학계, 기업인 등 |
|---|---|
- 이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성격상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능동적인 통로와 장이 되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됨.
 - 바.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 지원(안 제23조)
 - 기존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간의 상호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규정하려는 것임.
 - 아래 [표2] 및 [표3]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의 평가 등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일부 유사한 기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정비가 요구되며, 장기적으로는 2개의 위원회를 흡수 또는,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부칙에서 조례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사항은, 동 조례안과 중복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보임.

5)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3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6)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4조 제2항,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이행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표2]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비교

구분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 100인 이내, 환경분야 전문가	- 50인 이내, 지속가능발전 전문가
법적 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26조,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위상	- 민·관·산 거버넌스 단체 (서울시 대표 : 서울특별시장)	- 시장직속 위원회 (위원장 : 시장이 임명)
기능	- 서울의 제21 실천 및 이행상황 점검 - 행정계획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 시민과 기업의 협력으로 환경개선	- 지속가능기본전략, 이행계획수립 - 중장기 행정계획검토 -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발간

[표3]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기능 중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일부 유사한 기능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기능(제2조 제2항) :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 기획조정위원회 기능(제5조) : “지속가능성 등 주요업무에 관한 협의·조정”
- 분과위원회(제8조)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련 사항
- 지속가능성평가 등(제16조)

사. 종합검토 의견

현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 최하위권⁷⁾으로, 아직 그 개념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아 선진국 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각 선진국들은 이미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제도화하여 운영⁸⁾하고 있으므로, 서울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속가능성 제고(提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때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은 긴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세부적인 검토의견에서도 적시한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기본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이행계획과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지속가능성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장 보고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해야 할 것임.

그리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성격은 학계, 산업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위원회 구성원에 시의원도 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도록 명문화해야 할 것임.

7) 200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지속가능성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체 146개국 중 122위

8) 법률규정(헌법 : 프랑스·스위스, 법률 : 벨기에·캐나다·魁·백)

정부조직(지속가능발전부 : 스웨덴·프랑스, 녹색각료회의 : 영국·독일)

정책결정(전 부처 환경영영체제도입 : 영국, 지속가능발전 감사 : 캐나다)

* 우리나라는 헌법 제35조에 환경권만 명시

4. 질의 및 답변요지

- 향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의 협수·통합할 의향은 없는지?

- 답변 : 사실상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의 관계 설정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합의를 거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하는 등 상호 상충되는 부분은 보완할 것임. 또한, 그 동안의 성과를 고려하여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지속시킬 예정임.

-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아니라 위촉하고 있음. 서울시의 장기계획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 답변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적인 자문위원회로, 시장이 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될 수가 없음.

-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국가 기본계획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31개의 행정계획들은 서울시의 정책이나 사업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답변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국가 기본계획과 연관성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지침적인 성격임. 또한 31개의 행정계획에는 지속가능성이 충분히 포함되도록 할 것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